병역의무자(보충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보충역)]

각 보충역별 개념 정리, 편입대상(자격), 군사교육소집, 복무사항 및 복무 시 유의사항 등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과 복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보충역) 1
1. 보충역 개관 4
1.1. 보충역의 개념 및 종류 4
1.1.1. 보충역이란 4
1.1.2. 보충역의 종류 개관 5
2. 보충역 복무 7
2.1. 사회복무요원 7
2.1.1. 사회복무요원의 개념 및 소집 7
2.1.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9
2.1.3.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등 12
2.1.4.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15
2.2. 예술·체육요원 18
2.2.1. 예술·체육요원의 개념 및 자격 등 18
2.2.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19
2.3.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22
2.3.1. 개념 및 자격 등 22
2.3.2. 복무 23
2.4. 공익법무관 28
2.4.1. 공익법무관의 개념 및 자격 등 28
2.4.2. 공익법무관의 복무 29
2.5. 공중방역수의사 32
2.5.1. 공중방역수의사의 개념 및 자격 등 32
2.5.2.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33
2.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35
2.6.1. 개념 및 자격 등 35
2.6.2. 복무 41

1. 보충역 개관

1.1. 보충역의 개념 및 종류

1.1.1. 보충역이란

보충역이란?

병역의 종류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른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지원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 병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병역 구분	내 용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의 개념

▪ 보충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과 다른 역종 간 비교

▪ 복무유형에 따른 구분

역 종	현 역		예비역	보충역	
복무형태 (간부 제외)	현역병 (육·해·공군, 해병대)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상근 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 복무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출처: 병무청-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출처: 병무청,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1.1.2. 보충역의 종류 개관

보충역의 종류

보충역의 종류 및 내용

▪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중에 어느 하나로 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

▪ 보충역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조).

보충역의 종류	내용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보충역 복무

2.1. 사회복무요원

2.1.1. 사회복무요원의 개념 및 소집

"사회복무요원"이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제3호].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를 지정받아 복무하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보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병역법」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1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제1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소집대상(자격)

▪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다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

- 병역판정검사결과 학력, 신체등급,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제외) 중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소집순서 결정 및 소집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합니다(「병역법」 제28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합니다(「병역법」 제29조제1항 본문).

- 다만, 「병역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해 따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9조제1항 단서).

▪ 병무청장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9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52조).

-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집통지서의 송달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 다만,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9조).

-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전자 송달된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까지 열람하지 않아 소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세대주등이 소집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지연도착의 신고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 위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 ※ 소집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
>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2014. 1. 11. 2일 뒤인 2014. 1. 13.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이 가능한 마지막 날로 안내한 2014. 1.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2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집기일 전에 연기신청에 필요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1. 16.까지 지연입영이 가능함에도 2014. 1. 15.로 정하여 안내함으로써 입영을 포기하거나 소집기일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집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21545 판결).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의 실시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제29조제3항).

▪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사회복무요원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 본문).

▹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 단서).

> ※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의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다만,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에 소집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호).

군사교육소집 기간

▪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소집 입영판정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 신체검사

▹ 심리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 ※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자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현역 1(현역병)-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현역병 입영신체검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1.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복무기간 및 근무시간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병역법」 제30조제1항).

▹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5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시행일자: 2018.10.1)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제1항).

대상	「병역법」	현행	조정	단축방법
사회복무요원	26개월	24개월	21개월 (-3개월)	•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역자: 2주 단위 1일씩

입대일자		단축 기간	입대일자		단축 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2020-02-17	2020-03-01	89일	2020-03-16	-	3개월 (21개월)
2020-03-02	2020-03-15	90일	-	-	-

▪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0조제2항).

근무시간

▪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1조제4항).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적용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

보수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군사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병역법」 제31조제5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 ※ 보수 금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제도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구분	휴가일수

연가	√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에 따른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다만, 결근·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청원휴가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 이내(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를 입은 경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복무가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 √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 10일 이내
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이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공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공소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을 통지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 사회복무요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 운동 금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2조의3제1항).

▪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2조의3제2항).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2조의3제3항).

2.1.3.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등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분할복무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1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①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이 인정하는 경우

▪ 위 사유 중 복무중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1조의3제2항).

1. ①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틀어 2년. 단,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음
2. ②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③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틀어 6개월

복무기관의 재지정

▪ 사회복무요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2조제4항, 제32조제1항제3호·제6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복무 중 겸직

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2항 전단).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개월 미만의 기간 중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제한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3항).

-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복무이탈 및 대리복무 등

복무이탈 등에 따른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89조의2제1호).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복무이탈 등의 벌칙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으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제89조의3).

- 「병역법」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병역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병역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함)
- 「병역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대리복무 시 벌칙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

보상 및 치료

보상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5조제2항).

▪ 순직한 사회복무요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봅니다(「병역법」 제75조제3항).

▪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치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5조제4항).

2.1.4.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복무기간만료자의 소집해제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소집해제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0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

▪ 복무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9조제5항).

각 사유에 따른 소집해제

질병에 따른 전시근로역편입 등

▪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수술을 받은 병(의)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경력이 있는 병(의)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1항 본문).

▪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의 접수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1항 단서).

▪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자로 바로 소집해제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2항).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편입 등

▪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5조제1항).

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③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

④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⑤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⑥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위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제출하면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그 서류를 검토하고, 전시근로역편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 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편입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6조제1항).

▪ 위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6조제2항).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1항).

▪ 사회복무요원이 위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서류를 검토하여 병역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2항·제3항).

▪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해야 하고, 재복무하게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증을 회수한 후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를 교부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4항 및 제5항).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등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외이주사유(「병역법」 제6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제1항).

- 국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적격자를 심사하여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제2항).

▪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9항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

①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함)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③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2.2. 예술·체육요원

2.2.1. 예술·체육요원의 개념 및 자격 등

"예술·체육요원"이란?

개념 및 의의

▪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의3).

▪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배정 및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7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편입대상(자격)

▪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3에 따른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함)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의 구체적인 목록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1부터 3까지 및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예술·체육요원-편입인정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입절차

▪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예술·체육요원 추천자 명단을 통보하고, 「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의 명단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단서).

▪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자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상성적, 국외체재 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처리 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2항).

군사교육 소집

소집절차

▪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의3 본문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7조제1항).

▪ 다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의3 단서).

▪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 예술·체육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 입영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제1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2.2.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복무기간 및 내용

의무복무기간

▪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34개월)이며, 편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3 제1항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예술·체육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2항·제3항).

복무내용

▪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4항).

▪ 예술·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고 함)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5항).

▪ 위에 따른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복무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으로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1항).

▪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2항).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합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⑤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3항).

① 「초·중등교육법」 의 학교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의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

② 「초·중등교육법」 의 특수학교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소년원

④ 「아동복지법」 의 아동복지시설

⑤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4항).

복무만료

▪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2항).

▪ 예술·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연장복무

▪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1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1항 단서 및 제89조의2제1호).

▪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제1항).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다른 예술·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 예술·체육요원이 「병역법」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2항 단서).

▪ 예술·체육요원이 위의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제2항).

편입취소

▪ 예술·체육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4항).

①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②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③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⑤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⑥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③과 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⑦ 「병역법」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5항).

- 1. 위의 편입취소 사유의 ①·②·③·⑤·⑥·⑦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2. 위의 편입취소 사유의 ④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7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게 「병역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제1항).

▪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제2항).

▪ 편입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견제출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제3항).

2.3.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2.3.1. 개념 및 자격 등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개념

▪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

법률상 신분

▪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공중보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복무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합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

편입대상(자격)

▪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 이하 같음)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4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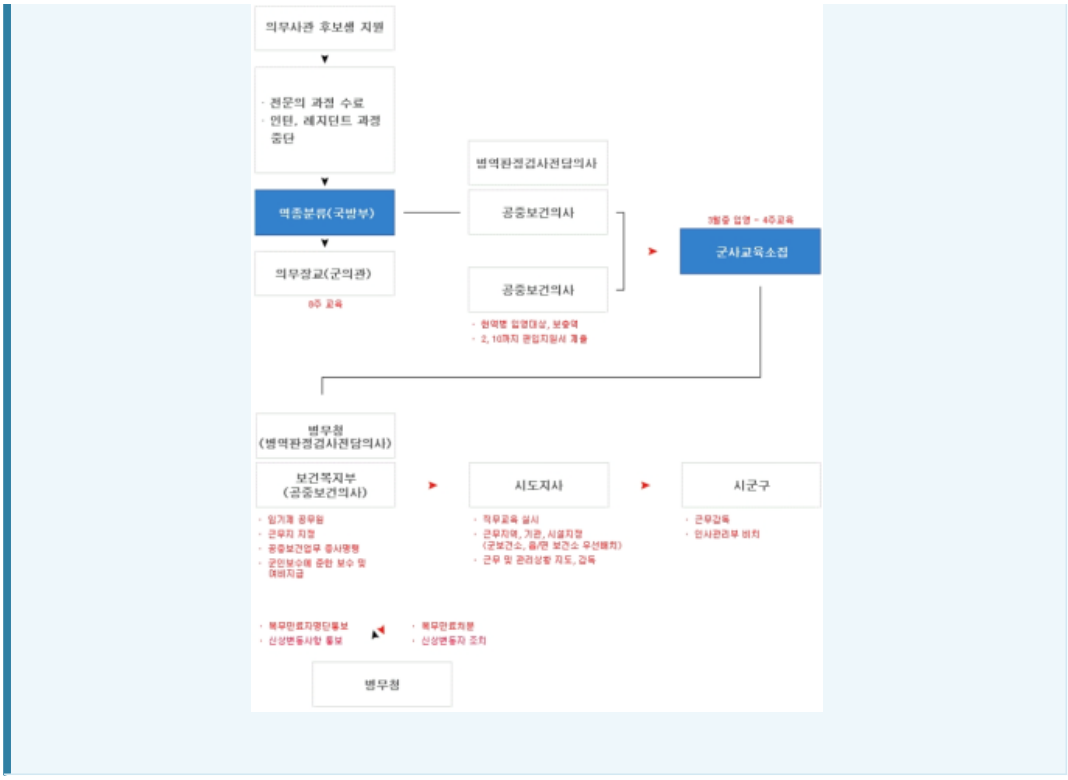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②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위의 ②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 ※ 공중보건의사 등의 병역의무이행 흐름도(출처: 병무청-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



군사교육 소집

소집절차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2호).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4주 훈련)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 신체검사
- 심리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2.3.2.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

복무기간

▪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제2항).

복무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
  - √ 병원선(病院船) 및 이동진료반
  - √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보수

▪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 ※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25. 4.)].

> ※ 휴가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33쪽~4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사항

복무사항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2항).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4항).

▪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합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5항).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위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합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2제6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병역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릅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7항).

> ※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만료

복무만료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복무 시 유의사항

편입취소

▪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제2항·제1항 및 제34조의3).

구분	편입취소 사유

공통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③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③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④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⑤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지 않거나,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병역법」 제34조의2제4항)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 또는 「병역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제3항).

복무기간 연장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복무한 때에는 그 업무에 복무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제3항). 또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2항).

▹ 직무 외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의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3항).

▹ 「병역법」 또는 「병역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4항 본문).

복무이탈 등

▪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외교부장관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2호).

▹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

2.4. 공익법무관

2.4.1. 공익법무관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익법무관"이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3호).

▪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익법무관 편입

편입대상(자격)

▪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1항).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②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의 편입에 있어서 위의 ②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군사교육 소집

소집절차

▪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2호).

▪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 지방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 신체검사
- 심리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2.4.2. 공익법무관의 복무

복무사항

복무기간

▪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2항).

업무와 배치

▪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인이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복무할 공익법무관을 다음과 같이 배치해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조).

- 법률구조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
-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보수

▪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 ※ 공익법무관의 보수지급기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속하므로(「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받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 공익법무관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무만료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복무 시 유의사항

신분상실과 신분박탈

▪ 공익법무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횡령·업무상횡령 및 배임·업무상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았을 때

④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⑥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

편입취소·재편입 제한 및 복무기간 연장

▪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2항,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게 된 경우

▪ 위의 사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3항).

▪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6조제4호).

▪ 공익법무관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복무이탈 등

▪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2항 및 제1항제4호).

▪ 법무부장관 또는 병무청장(법무부장관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은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 법무부장관은 위의 사유에 따라 공익법무관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3호).

▹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

2.5. 공중방역수의사

2.5.1. 공중방역수의사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중방역수의사"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5호).

▪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편입대상(자격)

▪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1항).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② 「병역법」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③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의 편입에 있어서 위의 ②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군사교육 소집

소집절차

▪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3항).

▪ 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 신체검사
- 심리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2.5.2.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복무사항

복무기간 및 업무

▪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2항).

▪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복무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며,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보수

▪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와 같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휴가

▪ 공중방역수의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7. 다. 휴가 참조).

> ※ 공중방역수의사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무만료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복무 시 유의사항

신분상실 및 신분박탈

▪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상실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 수뢰·뇌물제공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나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함]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횡령·업무상횡령 및 배임·업무상배임)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⑨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⑫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부터 ③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복무한 때

④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편입취소 및 복무기간 연장

▪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됩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1항·제2항).

-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해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복무이탈 등

▪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병무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2호).
-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

2.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2.6.1. 개념 및 자격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란?

개념 및 법적 의의

▪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6호).

▪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7호).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박사 등 우수 연구 인력을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 분야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기술·기능 인력을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복무토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2025 병무상담교재: 사회복무·동원분야 2』, 121쪽 참조).

병역지정업체 인원 배정 및 선정

필요인원통보 및 배정

▪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 전문연구요원 또는 「병역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함)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디초지사(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 다음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함)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합니다(「병역법」 제36조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6조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후단).

√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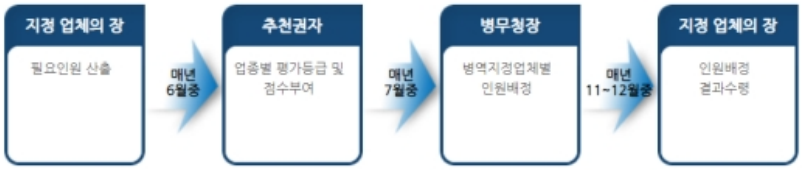
√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체

▪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 분야별 업체 선정기준은 <병무청-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자격

공통 편입자격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병역법」 제39조)을 35세(「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6조제5항).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③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편입대상(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7조제1항).

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함)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함]

③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위 ②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함]

※ ② 또는 ③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7조제3항 전단).

※ 연구분야별 편입대상과 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등 세부 편입기준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입절차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구비서류[(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은 수료관계증명서와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51조).

▪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 위에 따라 전문연구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 방위산업연구기관(「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 및 제35조)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음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학력	해당 기술자격 등급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함)	√ 기사 √ 해기사(소형선박조복무는 제외함)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함)	√ 기사 √ 산업기사 √ 해기사(소형선박조복무는 제외함)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을 포함함)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능사보를 포함함) √ 해기사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3항).

▪ 위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공업·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건설업, 수산 및 해운업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함)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합니다(「병역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 위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 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위에 따른 편입 대상자별 편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편입대상	편입자격
후계농어업경영인	•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 다만, 가족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를 말함)이 같은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함)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의 제한

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9조제1항].

▪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母企業)을 말함]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8조의2).

전공분야 등과 다른 분야 복무자에 대한 편입제한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제1항).

1.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다른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2.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 다만,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연구기관의 주연구분야가 다른 때에는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편입할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제2항).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한 기술자격·면허와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제3항).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1조제1항).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1조제2항).

군사교육 소집

소집절차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4주 훈련)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제39조제2항).

▪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3호).

▪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4호).

▪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 신체검사

▹ 심리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관리현황의 인터넷 열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 공개/개방 → 정보공유 → 국실별 주요정보 → 사회복무국 클릭

2.6.2. 복무

복무사항

요원별 복무분야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의 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요원의 종류	복무 분야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음)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병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함)(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 이 경우 승선복무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해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복무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농어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위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의무복무기간 및 기간의 계산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9조제1항).

▹ 전문연구요원: 3년

▹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는 26개월(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대상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

> ※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5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시행일자: 2018.10.1)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된 23개월입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제1항).

▪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본문).

①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②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함) 또는 정직기간

③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④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⑤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⑥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⑦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일부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병역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병역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⑧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

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 다만, 위의 ③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④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단서).

전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9조제3항 본문).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9조제3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1.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2. 자연계대학원

3.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 또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9조제3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①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②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함)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①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함)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 산업기능요원: 6개월

②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병역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병역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 내에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③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⑤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⑦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⑧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함)

⑨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⑪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함)가 발생한 경우

⑫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⑬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무 전직 또는 승인 전직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위의 ① 전문연구요원, ②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 ⑦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5항).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8항).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 예외

▪ 기능특기자로서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 후계농·어업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함)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본문).

- 국내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 국내파견근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와 제147조)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후단).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복무 시 유의사항

수학(修學)의 금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함. 이하 같음)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단서).

①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②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이 위의 ②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편입의 취소 등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본문).

①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제한에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②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③ 의무복무기간을 35세(「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④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⑤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함)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⑥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⑦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⑧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 「병역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병역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⑨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⑪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⑫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 ※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처분에 관한 판례
>
> 산업기능요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414 판결).

▪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

부정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사람(위의 편입취소 사유 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 ※ 의무복무기간의 위반에 따른 연장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41조제2항).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휴직·정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무단결근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함)

신분의 복귀 및 복무기간의 단축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3항).

1. 「병역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병역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병역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병역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기 전까지 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기 전까지 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병역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746)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복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